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07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관련 공제금 지급 대상자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3
2.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소멸시효 중단 규정	10
3. 안 부칙	13
※ 참고자료	15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개요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5.
3. 회부연월일 : 2025. 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804만여 개(2022년 기준)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천 895만여 명으로 추산됨. 중소기업자가 힘을 합하여 공동 구매·연구개발·제조 등 협동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는 884개(2024년 기준)로 집계됨.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사망, 질병·부상 원인 퇴임, 회생파산 등의 급박한 생계위협 및 위기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그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상당수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소상공인은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공제금 청구 안내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2024년 11월 말 기준 미지급 가입자 2만 1,896명 중 절반 이상인 1만 1,179명이 연락두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지급금 규모가 1,84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공제회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 및 제12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관련 공제금 지급 대상자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특히,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¹⁾에게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제1항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u>대상여부 확인</u>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 ----- ----- ----- ----- <u>대상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u> ----- ----- ----- ----- -----.-----.

1)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하고,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에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의미함.

현행	개정안
<신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신설>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서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 및 사업 재기(再起)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²⁾에 따라 자금이 조성·운용되고 있는 공제제도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5년 1월말 기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재적 가입자 수는 약 177만 명이고, 공제부금은 약 28조 7천억원임.

[표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현황(2025년 1월말)

(단위: 명, 억원)

구 분	가입(A)	해약(B)	공제금지급(C)	재적(A-B-C)
공제가입자	2,975,381	354,776	850,478	1,770,427
공제부금	396,419	21,875	87,426	287,115

주: “공제금지급”은 폐업, 사망, 노령(60세 이상),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 등의 사유로 공제금이 지급되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탈퇴된 경우를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³⁾는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에 관하여 공제금의 지급, 가입자에 대한 대출, 복지 후생사업,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관련 부대사업을 열거하고 있음.

이 중 공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1항제1호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개략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공제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은 이러한 법률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3월말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제1호) 외에도 해산(제1호), 사망(제2호), 퇴임(제3호), 노령(제4호)과 함께,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제5호), 질병·부상(제6호),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제7호), 파산선고(제8호)를 공제금 지급 사유로 규정⁴⁾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미청구 공제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월말 기준 공제금 지급 대상자 중 미청구 건수는 2만 2,493건이고, 이들이 적립한 공제부금액은 2,031억원에 달함.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가.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표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
인원수	23,782	20,901	22,647	23,991	22,493
부금액	1,424	1,600	1,917	2,306	2,031
재적가입자	1,542,268	1,667,113	1,718,901	1,770,988	1,770,4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청구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재, 결번, 수신거부와 같은 공제금 지급 대상자 연락불가 사유가 전체 미청구 건수(2만 2,493건)의 50.3%에 해당하는 1만 1,3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미청구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현 황	건 수	비 율
우편안내	청구예정	8,457	37.6
전화안내	추후수령	2,205	9.8
	부금통산*	378	1.7
	상속대기	137	0.6
연락불가	연락불가**	11,316	50.3
총 계		22,493	100.0

주: * 폐업 후 지급 청구하지 않고 재창업 시 전계약의 부금과 납부월수를 신계약으로 이어가는 제도

** 부재, 결번, 수신거부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관련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공제금 지급 대상자 연락불가 사유로 인한 공제금 미청구 건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휴대번호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방안(“전화번호” → “전화번호(휴대번호를 포함한다)”)을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18조의4제5항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수월해져 공제금 지급이 활성화되는 등 공제가입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이와 함께 안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관련하여 전화번호 확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알뜰폰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현 행	개 정 안	중기부 수정의견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u>대상 여부 확인</u>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 ----- ----- ----- ----- <u>대상</u> <u>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u> ----- ----- ----- ----- -----.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2.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소멸시효 중단 규정

안 제121조의2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제1항),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의 행위를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이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2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 설>	②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현행법 제106조의2가 준용하고 있는 제35조의3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관련 공제금 청구권의 현행법상 소멸시효는 3년⁵⁾⁶⁾임.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의2(준용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106조(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6) 시효(時效)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의 소멸시효 내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상당수 누적되고 있어, 공제금 지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⁷⁾⁸⁾.

[표 4] 공제사유 경과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1년이하	1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소멸시효경과)	총합계
미청구자 수 (비율)	16,492 (73.3%)	1,635 (7.3%)	4,366 (19.4%)	22,493 (100%)
미청구 부금액	1,819	94	118	2,03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와 함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소멸시효로 인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이 감소하게 되어 공제금 지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121조의2제1항은 본문과 단서의 형태로 그 문안이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과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전문과 후문의 형태로 문안 구성을 개선하거나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 규정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고,

7) 국회사무처,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2024년10월8일)”, 2024, pp. 27~28.

8) 서울경제TV,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가능해진다, 이종배,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2025. 2. 6일자.

안 제121조의2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관련된 시효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 문안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조항 사이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1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의 행위를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이나, 공제금 지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가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의 경우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⁹⁾¹⁰⁾¹¹⁾.

9) [참고] 청구권자의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피청구권자의 안내·통지 행위 관련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례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⑧ 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⑥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관련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그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규정함에 따라 공제가입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안 부칙

개정안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10) 이와 함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와 같은 판례(「민법」 제168조제3호 관련)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11)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안 부칙 제2조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관련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연장(3년→5년)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규정한 것이고, 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규정한 것임.

이러한 적용례와 특례 규정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관련 공제금 지급 대상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안 부칙 제3조와 같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까지 소급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할 지에 대하여는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시효제도의 취지 등과 함께 개정안의 입법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개요

□ 제도개요

-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폐업·노령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운영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2007. 9월 사업 개시

□ 주요내용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포함)
* 제외업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무도장,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마사지업
- (납입부금)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 (공제사유)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 퇴임), ④노령(60세이상 & 10년이상 가입),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⑦질병·부상, ⑧희생·파산
- (지급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기준이율('25.1분기) : 3.0%. 단, 폐업·사망시 3.3%(기준이율+0.3%)
- (기타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6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 예금자보호법은 미적용

□ 가입현황(2025.1월말 기준)

- 공제 재적가입자 177만명, 부금 28.7조원

(단위: 명, 억원)

구 분	가 입(A)	해약(B)	공제금지급(C)	재적(A-B-C)
공제가입자	2,975,381	354,476	850,478	1,770,427
공제부금	396,419	21,875	87,426	287,11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